6. 시험·검사설비 관리

주 요 설 비 명	구 비 요 건
1. 치수 측정기기 2. 안정성 시험설비 3. 선반판 지지구강도 시험기기 4. 선반판 휨 시험기기 5. 상판 및 바닥판 강도 시험기기 6. 여닫이문의 강도 시험설비 7. 여닫이문의 내구성 시험설비 8. 서랍 및 레일의 강도 시험설비 9. 서랍 및 레일의 내구성 시험설비 10. 서랍의 급속 개폐 시험설비 11. 서랍의 바닥판 변형 시험기기 12. 문짝 열냉반복 시험설비 13. 문짝 수축과 열저항 시험설비 14. 손잡이 부착강도 시험설비 15. 함수율시험기 16. 도장막 시험설비 16.1 도장막 밀착 시험기기 16.2 도장막 경도 시험기기 16.3 도장막 방청성 시험기기 17. 촉진내후성 시험설비 18. 화장판 시험설비 18.1 화장판 내마모성 시험기기 18.2 화장판 내열수성 시험기기 18.3 화장판 내 열 성 시험기기 18.4 화장판 내오염성 시험기기 18.5 화장판 내끓임성 시험기기 19. 염수분무 시험기 20. 경첩 내구성 시험기 21. 폼알데하이드 방출량 시험기 22. 휘발성유기화합물 방출량 측정 및 분석시험 설비	ㅇ. 해당 표준에 규정되어 있는 품질특성과 자재 및 제품을 검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험검사 설비를 보유하고 설비의 정밀도, 정확도 유지를 위하여 국가표준기본법 제3조 제17호의 규정에 의한 교정을 실시하되 사용빈도, 측정기의 특성 등을 감안하여 회사의 실정하고 이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ㅇ. 정밀도 및 정확도를 시험검사하기 위하여 시험검사 설비의 설치장소가 적정하고, 시험검사설비의 사용상황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어야 하며 시험검사설비 관리자는 시험검사설비의 관리규정에 따라 관리할 수 있어야 한다.
비 고	1. 18.1항 (화장판 내마모성 시험설비) 및 18.4항(화장판 내오염성 시험설비) 화장판 또는 화장면 사용 시에 한함. 2. 18.2항(화장판 내열수성 시험설비), 18.3항(화장판 내열성 시험설비), 18.5항(화장판 내끓임성 시험설비)은 두께 1.1 ㎜ 이상의 화장판 또는 화장면 사용 시에 한함. 3. 9. 항의 서랍 및 레일의 내구성 시험설비는 서랍레일 및 미닫이문 레일을 포함한다. 4. 시험설비는 외부공인기관(KOLAS포함)과의 사용계약 체결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또한 외부공인기관(KOLAS포함)의 시험성적서로 관리하는 경우, 보유하고 있지 않아도 된다. 이때에는 검사 Lot별로 반드시 외부공인기관 시험성적서를 보유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인수검사, 공정 및 제품의 검사에 필요한 제품의 치수, 자재의 두께 등을 측정하기 위한 측정 장비는 자체에서 보유 하여야 한다.

7. 제품 시험을 위한 샘플링 방식

번 호	검사항목	로트의 크기	시료의 크기 (n)	판정기준		비 고
				Ac	Re	
	SPS- KHFC 003-2075 의 검사항목	재고량	2 (대표적인 것)	0	1	

비 고

1. 로트는 공장별로 관리하고 있는 로트로 한다.
2. 인증심사 시 시료채취는 재고량 중에서 주요 구성품인 옷걸이봉, 선반, 서랍 등이 포함된 제품 1종에 대하여 샘플링하고 n=2로 한다. 단, 여닫이문의 내구성 시험, 서랍 및 레일의 내구성 시험은 n=1로 한다.
3. 정기심사 및 시판품조사 시 시료채취는 재고량 중 제품 1종에 대하여 샘플링하고 n=1로 한다.
4. 제품의 구성품들이 구조 및 재질이 동일하다고 판단될 때 제품여닫이문의 내구성 시험, 서랍 및 레일의 내구성시험은 구성품 중 대표적인 제품을 선택하여 1회 시험한다
5. 채취한 시료(제품)에 제품으로 시험이 곤란한 성능시험 항목 중 목질재료(합판,파티클보드, 섬유판, 화장합판, 파티클보드치장판, 치장 섬유판 등)시험, 금속부도막시험, 화장판 시험, 경첩의 내식성 및 내구성 시험과, 인테리어시트 , 목질가공재 , 인조대리석의 안전성 시험 등이 포함될 경우는 해당 성능시험에 필요한 원부자재를 별도로 채취한다. 단, 원부자재의 시료는 시료로 채취한 제품에 구성되어 있는 것과 동일한 것이어야 한다.
6. 제품심사 결과, 제품의 안전성 시험항목에 대한 부적합이 발생 시, 1개월 내 시정조치 후 현장 확인 및 추가시험을 1회에 한하여 실시하고, 표준 미달사항에 대해서는 경결함, 중결함, 치명결함으로 구분한다.
7. 제품의 구성품 중 댐핑 혹인 틸팅 기능 레일이 적용된 서랍에 대하여 서랍의 급속개폐 시험을 제외할 수 있다.

8. 제품심사결과 결함의 분류

분 야	표준번호	품목	검 사 항 목	경결함	중결함	치명 결함
일용품	SPS-KHFC 003-2075	공동주택용 현관장	ㅇ 겉모양	○		
			ㅇ 치 수	○		
			ㅇ 구조 및 가공	○		
			ㅇ 성 능	○		
			- 안정성			
			- 강도 및 내구성			
			. 선반판 지지구의 강도		○	
			. 선반판의 휨		○	
			. 상판 및 바닥판의 강도		○	
			. 여닫이문의 수직력		○	
			. 여닫이문의 수평력		○	
			. 여닫이문의 내구성			○
			. 서랍 및 레일의 강도		○	
			. 서랍 및 레일의 내구성		○	
			. 서랍의 급속 개폐		○	
			. 서랍의 바닥판 변형		○	
			. 문짝의 열냉반복		○	
			. 문짝의 수축과 열저항		○	
			. 손잡이 부착부의 강도		○	
			- 함수율		○	
			- 도장막(밀착,경도,방청,촉진내후성)		○	
			- 화장판		○	
			- 폼알데하이드 방출량			○
			- 경첩의 내식성 및 내구성		○	
			ㅇ 재료의 안전성		○	
			- 목질가공재			
			. 폼알데하이드, TVOC		○	
			- 완제품			
			. 폼알데하이드, TVOC		○	
			ㅇ 표시	○		

9. 단체표준 인증마크 표시방법

상품의 단위	표 시 장 소	표 시 방 법	표 시 내 용
제품마다	단체표준 마크표시 및 제조자 표시는 몸체전면에 잘 보이는 곳에 하여야 하며 위판의 표시는 회사 실정에 따라 할 수 있다.	1.금속 또는 플라스틱 바탕에 인쇄하거나 금속 또는 플라스틱 바탕에 각인 또는 돌출 2. 인쇄 또는 각인	1. 단체표준 표시도표 단체표준마크 지름 10 mm 이상 2. 표준명 및 표준번호 3. 제조연월일 4. 제조자명 또는 그 약호 5. 인증단체명 6. 단체표준의 표시사항
비 고 1. 반침장의 인증마크는 제품의 표면(몸체, 문짝)에 각각 대표되는 주요 구성재의 문짝 등 전면의 잘 보이는 곳에 부착하여야 하며, 기준에 따른 표시내용은 외관상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소비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위치에 부착하여야 한다.			

10.제품의 인증구분

단체표준번호	표 준 명	종 류 또 는 등 급
SPS-KHFC 003-2075	공동주택용현관장	-